

# 수익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

| 경상남도 | 회 계 과(☎055-221-3823)  
| 함양군 | 재 무 과(☎055-960-4320)

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익계약 확대, 계약절차 간소화, 선금 특례, 지연배상금 면제 등을 시행합니다.

## ▶ 대 상

- 코로나19 관련 공사·용역·물품 등의 계약
- 계약절차 간소화 대상 모든 공사·용역·물품 등

## ▶ 내 용

### - 수익계약 확대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(열화상카메라, 마스크 및 손세정제)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익계약으로 피해 최소화

\* 재난복구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

### -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 및 선금 특례시행

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절차 간소화(입찰공고 및 적격 심사 기간 단축) 및 선금급 지급률 상향(70%→80%)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### - 지연배상금 면제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 면제

※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입증한 경우 가능

[관련법령] 지방계약법 제9조, 제10조, 제18조, 제30조,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등